

# 감사 규정

제정	2006. 04. 14. 규정 제5호
전문개정	2009. 07. 13. 규정 제42호
개정	2018. 02. 23. 규정 제152호
개정	2021. 06. 04. 규정 제217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원인 감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자체 감사규칙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 02. 23.>

**제2조(감사의 직무범위)** 진흥원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무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사업계획 집행상황의 감사
3. 관련법령 및 진흥원 정관이 정한 업무에 대한 감사
4. 직무 및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감사
5. 기타 부천시장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 의뢰하는 업무의 감사 <개정 2018. 02. 23.>

**제3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재무회계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 02. 23.>

② 재무회계감사는 매년 진흥원의 사업실적 및 재무회계 운영사항에 대하여 익년 3월 15일 이내에 연1회 실시한다. <개정 2018. 02. 23.>

③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부천시장 또는 이사회에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다만, 진흥원 업무추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 2회 이내로 실시한다. <개정 2018. 02. 23.>

**제4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2장 감 사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과 공동수행의 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흥원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2인이 공동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사회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의결 시에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정관, 규정, 규칙 또는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권한)** ①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는 제3조제3항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특별감사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수립하여 부천시장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02. 23.]

### 제3장 감사업무의 수행

**제10조(감사실시)** 감사는 특별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시기, 감사범위를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2. 23.>

**제11조(감사대행실시)**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공인회계사 등에게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인력이 필요한 경우 부천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02. 23.>

**제12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5. 기타 필요한 조치의 요구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파면,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치결과 통보)** ① 이사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원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감사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가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재처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장에게 1월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조치결과 확인)** 감사는 차기 감사 시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시정요구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1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는 재심사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이사장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고발)**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제4장 보 고

**제17조(감사보고)** 감사는 특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장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2.

23.>

1. 감사실시기간
2. 피감사부서명
3. 감사의 직위 및 성명
4. 주요 감사 내용
5. 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6.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및 건의사항
7. 기타 참고사항

**제18조(감사종합보고)** 매년 특별감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익년도에 전년도 결산심의를 위하여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02. 23.>

**제19조(감사기록)** 감사는 제3조제3항의 특별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감사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8. 02. 23.>

**제20조(재무보고서의 사전검토)** ① 진흥원은 시장 등에게 주요 재무보고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2. 23., 2021. 06. 04.>

②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필한 경우 제1항의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021. 06. 04.>

**제21조(사고의 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이사장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100만 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100만 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기타재산의 손망실 또는 훼손

## 제5장 보 칙

**제22조(외부감사의 총괄)** ① 진흥원에 대한 외부 감사업무는 원장이 총괄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가 총괄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외부감사 내용을 지체 없이 이사장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수당)** 감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6. 04. 14. 규정 제15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7. 13. 규정 제42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2. 23. 규정 제152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6. 04. 규정 제217호)

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목개정 2018. 02. 23.]

## 특별감사 실시 계획서

분류번호 : 시행년월일 . . . .

수 신 :

제 목 : 발신 (인)

감사대상 부 서	감 사 실 시 내 용		
	감사기간 (일 수)	감사인수	주 요 대 상 업 무



(별지 제3호 서식)

## 감 사 일 지

접수 번호	일 자	건명 및 내용	소관부서	검토의견	감사의견 반영여부